

서울특별시 광진구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진구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절차상 하자과 같은 부작용을 발생시켰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그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또는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적용 대상과 요건, 운영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의사항) 이 규정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업무수행의 동기과 목적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이므로 감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감사실시를 면제하는 등의 제도로 운영되거나 오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대상 업무 전반에 걸쳐 적용한다.
② 국가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의 수립이나 집행과 직접 관련된 업무처리에 대하여는 정상을 더욱 심도 있게 검토하여 면책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면책”이란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또는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제 규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반사항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등에 대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감사규

칙」(이하 “감사규칙”이라 한다)상의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3.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이란 감사규칙에 따른 징계, 경고, 훈계 등의 처분을 말한다

4. “공무원 등”이란 감사규칙 제3조에 따른 감사대상 기관과 그 소속 공무원과 임·직원을 말한다.

제5조(면책대상) 이 규정에 따른 면책대상은 제4조제3호의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과, 같은 조 제4호의 ‘공무원 등’이다.

제6조(면책요건) ① 이 규정에 따른 면책요건은 적극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면책처리 한다.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 처리가 불합리한 규제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3.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 처리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
4.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는 제1항제4호에서 정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
3.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4.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쳤을 것

제7조(면책제외)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을 수수한 경우
3.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4.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5.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범죄의 경우
6.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7.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8.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제8조(면책제도 안내 등) 감사담당관은 감사규칙에 따른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실시계획을 통지하거나, 실지감사에 착수하는 때에는 해당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면책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 제9조(면책심의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적극행정 면책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면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감사담당관으로 하며, 위원은 심의안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부서장을 제외한 5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가 개최될 때마다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③ 면책심사 대상자가 6급 이상인 경우에는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보건소장과 광진구의회사무국장을 포함한 4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 ④ 심의회의 기록 관리 등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제2항의 경우에는 면책심의와 관련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간사로 하고, 제3항의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을 간사로 한다.

제10조(심의기준) 심의회는 적극행정 면책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해 해당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하자 및 부작용
2.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구민편익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창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긴 경미한 비위
3. 의사결정의 목적·내용 및 과정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되었으며, 목적달성을 위한 시급성·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에게 불편이 없는 사업을 적극적

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경미한 비위

제11조(심의회 개최 등) ① 심의회 회의는 감사결과에 대하여 구청장이 ‘징계요구 등의 양정’(이하 “징계양정”이라 한다)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 개최한다.

② 심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적극행정 면책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면책심의 대상 공무원 등이나 감사담당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심의회의 심사결과는 별지 제5호 및 제6호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제12조(징계양정 통보) 감사담당관이 감사종료 후 감사활동 결과에 대한 처분양정을 결정하기 전에 처분에 대한 비위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감사결과 조치 예정사항 통보서’(이하 “조치예정통보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 감사자 또는 피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면책심사 신청) ① 감사담당관 또는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피 감사자에 대하여 면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심의회에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를 받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특별히 면책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면책심사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적극행정 면책심사 신청사유가 제6조의 적극행정 면책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제7조의 면책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3. 징계시효의 완성이 임박하여 시급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른 면책심사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해당 감사결과 의 처분지시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하여야 한다.

제14조(면책심사 처리) ① 감사담당관은 제13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면책심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면책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면책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면책심사신청의 내용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일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에 이를 통보하여 감사결과 처분조서 작성에 참작·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적극행정 면책심사 요청을 받은 심의회는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심사의견) 면책심사 신청에 대한 심의회는 ‘심사의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결정하여야 한다.

1. 면책의견 : 제6조의 면책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의견 : 제6조의 면책요건 중 일부만을 충족하고, 제10조에 따른 심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3. 기각의견 : 제1호의 면책의견 또는 제2호의 감경의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제7조의 면책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16조(심사결과의 처리) ① 구청장이 감사결과에 대하여 최종 징계양정을 결정할 때에는 심의회는 심사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소속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심의회가 통보한 심사의견이 면책인 경우, 그 면책 대상자가 징계요구대상자인 때에는 면책처분과 함께 감사규칙 제2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훈계’하거나 제2호에 따라 ‘경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심의회로부터 통보받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사람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면책심사신청 안내

서울특별시 광진구 감사담당관이 실시하는 ○○○감사를 받은 공무원이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책심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의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권자

- 감사를 받은 공무원 본인
 - ※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피 감사부서 책임자 의견 첨부
- 감사를 받은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

2. 신청기간 : 처분지시 이전

3. 적극행정 면책요건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 처리가 불합리한 규제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 처리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다음 사항은 면책대상에서 제외

-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을 수수한 경우
-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범죄의 경우
-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감사결과 조치 예정사항 통보서

수신 :

발신 :

소 속	직 급	성 명	비위요지	조 치 예정사항	근거법규

비고 :

면책심사 신청서

「적극행정 면책 제도 운영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면책심사를 신청합니다.

적극행정면책 신청 요지		
구체적 판단기준 내용	해당여부	첨부서류
1.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2. 업무의 적극적 처리 여부		
3. 고의나 중대한 과실 존재 여부		
가.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나. 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		
다.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라.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쳤을 것		
5. 기타		

※ 필요시 관련증빙서류 및 의견서 첨부

「서울특별시 광진구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면책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부서
 (기관)명

직 명

성 명

(서명 또는 인)

광진구청장 귀하

면책심사조서

	감 사 기 관 명		감 사 연 월 일
	건 명		
	신 청 인		
	심 사 대 상 자		
	징 계 양 정 (안)		
	비 위 내 용		
신 청 사 유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 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감 사 부 서 책임자 검토 의견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 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 처리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총 합 의 견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광진구 적극행정 면책심의회 회의록

건 명					
심사대상자	소속		직위(급)		성 명
회 의 일 시			회의장소		참석인원 명
201					
참 석 자 : 위 원 장 (인) 부 의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간 사 (인)					

(작성방법)

1. 참석 위원들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도록 한다.
2. 위원들의 질의, 토론 등 주요 발언내용의 요지를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

서울특별시 광진구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2016년 6월 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인